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審 査 報 告 書

2005. 2. 25.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 경과

-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5년 2월 7일
 - 회부일자 : 2005년 2월 11일
- 상정일자 : 제23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 2005. 2. 21 :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의,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자치행정국장 김 재 욱)

- 제안 이유
 - 주택가격제도 시행과
재난방재조직·혁신분권·동학농민혁명 및 일제
강제동원 관련 전담인력을 증원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 정원의 총수 : 2,512명 ⇒ 2,538명 (증26명)
 - 집행기관의 정원 : 1,410명 ⇒ 1,436명 (증26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변동없음
 - 소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의 정원 : 변동없음
- 직급별 정원
 - 본 청 : 922명 ⇒ 948명(4급1, 5급7, 6급8, 7급10)
 - 의회사무처 : 변동없음
 - 직속기관 및 사업소 : 변동없음

3. 검토보고 요지

(기획행정전문위원 이상만)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일부개정 조례안은 소방방재청 신설에 따른 재난관리 지방방재조직을 신설하고, 혁신분권과 주택가격제 시행, 그리고 동학혁명 및 일제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인력 보강 등 국가시책 추진 기능강화를 위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으로서,

- 먼저 소방방재청 신설과 병행하여 재해예방과 상황발생시 효과적 대응을 위해 방재조직인 재난관리과(총괄담당, 대책담당, 복구담당, 지원담당)를 신설하고,
 - 근거 : 재난관리조직 개편지침(행정자치부 2004.12.18)
 - 기구정원 : 1과 4담당 17명 (4급-1, 5급-4, 6급-5, 7급-7)

- 시·군의 혁신분권 지원·총괄기능 강화를 위해 혁신지원팀을 신설하는 한편,
 - 근거 : 혁신분권 전담기구 개편지침(행정자치부 2004.12.24)
 - 기구정원 : 1팀 1명(5급-1, 6급이하 2명은 자체조정)
※ 2007. 12. 31일까지 한시정원임.

- 2005년도 주택가격제도 시행에 따른 조사·평가 전담부서인 과표담당을 신설하는 것이며,
 - 근거 : 주택가격평가 전담기구 개편지침(행정자치부 2005.2.2)
 - 기구정원 : 1담당 3명(5급-1, 6급-1, 7급-1)

- 2006. 12. 31일까지 한시정원 5명(5급1, 6급2, 7급2)으로 구성된 “역사규명담당”을 자치행정과에 신설하여 일제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업무를 담당하려는 것입니다.
 - 근거 : 동학혁명 및 일제강점동원관련 전담부서 설치지침(행정자치부2005.2.4)
 - 기구정원 : 1담당 5명(5급-1, 6급-2, 7급-2)

- 따라서 원활한 사업추진과 신규 행정수요 발생에 따른 정원 조정의 필요성을 담은 본 조례의 개정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여겨집니다.
- 다만, 제안이유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최근 정원 증가의 이유가 새로운 행정수요에 탄력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IMF구조조정 이전의 조직구조로 회귀하면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고 생각하며,
- 동학혁명과 일제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업무 등은 기관위임사무로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인건비는 자치단체가 부담하지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국가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비지원 계획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또한 역사규명관련 업무는 순 한자로 된 고문서의 판별능력이 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증원되는 인력중 한자 전문지식인 확보계획은 있는지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 아울러 집행부의 행정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이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업무 역시 상대적으로 강화되고 전문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의회사무처

에 대한 정원조정도 동시에 병행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내지 앞으로의 계획 등 보충 설명
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89
----------	-----

제출연월일 : 2005년 2월 7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이유

- 주택가격제도 시행과 재난방재조직·혁신분권·동학농민혁명 및 일제 강제동원 관련 전담인력을 증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 2,512명 ⇒ 2,538명 (증26명)
 - 집행기관의 정원 : 1,410명 ⇒ 1,436명 (증26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변동없음
 - 소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의 정원 : 변동없음
- 직급별 증원내역 : 일반직 26명(4급1, 5급7, 6급8, 7급10)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6. 참고자료 : 붙임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를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하여”로 한다.

제2조중 “2,512명”을 “2,538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1,410명”을 “1,436명”으로 한다.

제3조중 “직급별정원은 규칙으로”를 “직급별 정원은 별지와 같이”로 한다

부칙(조례 제2842호, 2005. 1. 1) 제2조중 “정원중 3명”을 “정원중 별표의 본청정원 3명(7급1, 8급1, 기능10급1)”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직급정원) 별표의 본청정원중 3명(4급1, 5급2)의 정원은 2005년 12월 31까지로 하고, 4명(4급1, 5급3)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사업소의 정원중 5명(3급1, 4급1, 5급3)은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한시정원) 집행기관의 정원중 별표의 본청정원 5명(5급1, 6급2, 7급2)의 정원은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5급 1명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 ⑤ (생략)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 (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2. 본청·소방학교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의 범위안

에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관리기관별로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⑤ (생략)